

##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23· 9· 27 조례 제1981호

**제1조(「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**제2조(「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만 20세”를 “20세”로 한다.

**제3조(「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만 16세”를 “16세”로 한다.

**제4조(「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**제5조(「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**제6조(「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만 55세”를 “55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**제7조(「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

제2조제8호 중 “만 6세 이상, 만 12세”를 “6세 이상, 12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만 13세 이상, 만 18세”를 “13세 이상, 18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하고, “만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**제8조(「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만 90세”를 “90세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만 90세”를 “90세”로 한다.

**제9조(「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·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·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**제10조(「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**제11조(「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**제12조(「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만 2세”를 “2세”로 한다.

**제13조(「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19세 이상 만 24세”를 “19세 이상 24세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만24세”를 “24세”로 한다.

**제14조(「이천시 아동·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아동·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13세”를 “13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만 19세 ”를 “19세”로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 
한다.

**제15조(「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  
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만 11세 이상 만 18세”를 “11세 이상 18세”로 한다.

**제16조(「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  
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의 비고란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하고, “만 13세 이  
상 만 18세”를 “13세 이상 18세”로 하며, “만 12세”를 “12세”로 한다.

**제17조(「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시립 월전미  
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만 6세”를 “6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  
로 한다.

**제18조(「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  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제4호 중 “만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**제19조(「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 
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만 6세”를 “6세”로 한다.

**제20조(「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 
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만 6세”를 “6세”로 한다.

**제21조(「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  
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만 13세 이상 만23세”를 “13세 이상 23세”로 한다.

**제22조(「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

**제23조(「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만 1세부터 만6세”를 “1세부터 6세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만 1세부터 만6세”를 “1세부터 6세”로 한다.

**제24조(「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**제25조(「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연령란 중 “만 세”를 “세”로 한다.

**제26조(「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만7세 이상 만13세”를 “7세 이상 13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만13세 이상 만19세”를 “13세 이상 19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제13조의11제5호 중 “만 6세”를 “6세”로 한다.

별표2 뒤쪽 추가인원요금 및 이용시간 중 “만 6세”를 “6세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